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334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나361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334411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권한

담당변호사 김지혜, 노지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변론종결 2023. 5. 25.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19. 10. 25. 별지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82,164,578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164,578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연 12%,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영업의 이전행위가 아니라 영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의 신탁행위이다.

그런데 영업을 떠나 사업자등록 명의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책임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영업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와 달리, 재산적 급부를 현실적으로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하여 두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채무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영업을 하면서 외형상으로 그 영업 주체가 제3자인 것처럼 꾸민 다음, 영업재산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내지 가장양도하거나 영업 이익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등의 형태로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은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그 이익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별지] 목 록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 D

성명 : B

생년월일 : E생

개업년월일 : 2019년 10월 25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F건물, 4층 G호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업 [종목] 영상 및 사진 촬영, 제작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H의 투자자이자 공동대표로 일을 하던 원고는 2019. 5. 23. 채무자 C와의 합의에 의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H이 채무자의 1인 회사이므로 채무자가 정산금에 대한 이행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채무자의 명의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정산금을 변제하지 않기에 원고가 채무자 및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각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각 2021. 1. 13.경 및 2021. 3. 26.경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68,172,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은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계산

1) 원금 : 68,172,460원

2) 지연손해금

- 2020. 2. 21.부터 2020. 12. 29.¹⁾까지의 지연손해금 13,992,118원

[$68,172,460 \times 24\% \times (313/366)$]

- 2020. 12.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 439866 약정금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3) 원리금 합계 : 82,164,578원 (68,172,460원 + 13,992,118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2. 채무자의 사해행위

원고는 채무자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H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3차례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스튜디오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I에서는 주식회사 H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2021. 2. 28.경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차인은 피고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채무자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자 채무자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H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D는 여전히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예금 채권 등 자산을 이전하였다고 고소하였던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약식명령이 2022. 6. 7. 확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는바, 위와 같은 주식회사 H 스튜디오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영입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는 원고와 투자계약 해지를 한 2019. 5. 23.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운영하던 사진관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고, H의 운영은 채무자가 계속해서 했으며 피고는 H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2021. 2. 28. 임대차 계약자 명의변경을 할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정보 3건이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것을 알고 있었는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당연히 추정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